

# 정 관

2014년 3월 21일 개정

 주식회사 농심

## 목 차

제 1 장 총 칙 .....	5
제1조(상호) .....	5
제2조(목적) .....	5
제3조(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	6
제4조(광고방법) .....	6
제 2 장 주 식 .....	6
제5조(발행예정주식의 총수) .....	6
제6조(일주의 금액) .....	6
제7조(주식의 종류) .....	6
제8조(주권의 종류) .....	7
제9조(주식의 발행 및 배정) .....	7
제10조(시가발행) .....	8
제10조의2(신주의 배당기산일) .....	8
제10조의3(주식매수선택권) .....	8
제10조의4(우리사주매수선택권) .....	10
제11조(명의개서대리인) .....	11
제12조(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	11
제13조(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	11
제 3 장 사 채 .....	12
제14조(사채의 발행) .....	12
제14조의2(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	12
제15조(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	13

제16조(준용규정) .....	14
제 4 장 주주총회 .....	15
제17조(총회의 구분 및 소집시기) .....	15
제18조(소집권자) .....	15
제19조(소집통지 및 공고) .....	15
제20조(소집지) .....	16
제21조(의장) .....	16
제22조(의장의 질서유지권) .....	16
제23조(주주의 의결권) .....	16
제24조(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	16
제25조(의결권의 불통일행사) .....	16
제26조(의결권의 대리행사) .....	16
제27조(주주총회의 결의방법) .....	16
제28조(주주총회의 의사록) .....	17
제 5 장 이사·이사회 및 위원회 .....	17
제29조(이사의 수) .....	17
제30조(이사의 선임) .....	17
제31조(이사의 임기) .....	17
제32조(이사의 보선) .....	17
제33조(대표이사 등의 선임) .....	17
제34조(대표이사 등의 직무) .....	18
제34조의2(이사의 보고의무) .....	18
제34조의3(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	18
제35조(이사회의 구성 및 권한) .....	18

제36조(이사회 의 소집) .....	18
제37조(이사회 의 결의방법) .....	19
제38조(이사회 의 의사록) .....	19
제39조(위원회) .....	19
제40조(경영위원회) .....	20
제40조의2(감사위원회의 구성) .....	20
제40조의3(감사위원회의 직무) .....	20
제40조의4(감사록) .....	21
제40조의5(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	21
제41조(이사 등의 보수와 퇴직금) .....	21
제42조(상담역 및 고문) .....	21
제 6 장 계 산 .....	21
제43조(영업년도) .....	21
제44조(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	22
제44조의2(외부감사인의 선임) .....	22
제45조(이익금의 처분) .....	23
제46조(이익배당) .....	23
제47조(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	23
부 칙 .....	23
제1조(적용법령) .....	23
제2조(시행일) .....	23
제3조(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	23
제4조(기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	23

# 주식회사 농심

## 정관

### 제 1 장 총 칙

제 1 조 (상호) 이 회사는 주식회사 농심이라 칭하고, 영문으로는 NONGSHIM CO., LTD.로 표기한다.

제 2 조 (목적) 이 회사는 다음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라면의 제조 및 판매
2. 식품 및 식품첨가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3. 과자류의 제조, 가공 및 판매
4. 유지제품 및 동가공품의 제조 및 판매
5. 청량음료 및 기호음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
6. 향신료 및 향료의 제조, 가공 및 판매
7. 사료 및 사료첨가물의 제조, 가공 및 판매
8. 수출입업 및 수입물품의 매매
9. 물품매도계약서의 발행
10. 약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1. 합성수지 및 동 제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12. 포장재의 제조, 가공 및 판매
13. 화물운송, 물류시설운영 및 물류서비스업
14. 부동산의 매매 및 임대
15. 음식 및 특정주류도매업
16. 토목 및 건축
17. 각종 농작물 및 종자의 재배, 가공, 매매 및 해외농업개발사업

18. 축산업
19. 주차장업
20. 식품 및 과자류의 매매 및 수탁판매
21. 수자원 및 지하자원 개발
22. 목욕탕, 여관, 호텔, 음식점, 관광사업 및 관광케도업
23. 상설시장의 사업 및 임대
24. 대규모 소매점(백화점, 쇼핑센터, 대형점)의 사업 및 임대
25. 먹는 샘물의 제조, 가공, 매매 및 수입판매
26. 예술문화사업
27. 전자상거래 및 인터넷관련사업
28. 건강기능식품의 제조, 가공 및 매매
29. 냉동식품의 제조, 가공 및 판매
30. 가맹점 모집 및 운영업
31. 전 각호에 부수되는 사업
32. 전 각호에 관련된 사업에 대한 투자

제 3 조 (본점의 소재지 및 지점등의 설치) ① 이 회사는 본점을 서울특별시에 둔다.

② 이 회사는 필요에 따라 이사회의 결의로 국내외에 지점, 공장, 영업소 또는 사무소와 현지법인을 둘 수 있다.

제 4 조 (광고방법) 이 회사의 광고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http://www.nongshim.com>)에 게재한다. 다만, 전산장애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광고를 할 수 없을 때에는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에 게재한다.

## 제 2 장 주 식

제 5 조 (발행예정주식의 총수) 이 회사가 발행할 주식의 총수는 일천이백만주로 한다.

제 6 조 (일주의 금액) 이 회사가 발행하는 주식 일주의 금액은 오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주식의 종류) 이 회사의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제 8 조 (주권의 종류) 이 회사의 주권은 일주권, 오주권, 일십주권, 오십주권, 일백주권, 오백주권, 일천주권, 일만주권의 팔종으로 한다.

제 9 조 (주식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가 이사회 결의로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방식에 의한다.

1. 주주에게 그가 가진 주식 수에 따라서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2.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를 배정하기 위하여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0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② 제1항 제3호의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신주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신주를 배정하는 방식
2. 관계 법령에 따라 우리사주조합원에 대하여 신주를 배정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까지 포함하여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주식에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신주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4.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신주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상법 제416조 제1호, 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서 정하는 사항을 그 납입기일의 2주 전까지 주주에게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165조의9에 따라 주요사항보고서를 금융위원회 및 거래소에 공시함으로써 그 통지 및 공고를 갈음할 수 있다.

④ 제1항 각호의 어느 하나의 방식에 의해 신주를 발행할 경우에는 발행할 주식의 수량 및 발행가격 등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⑤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 그 기일까지 신주인수의 청약을 하지 아니하거나 그 가액을 납입하지 아니한 주식이 발생하는 경우에 그 처리방법은 발행가액의 적정성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⑥ 회사는 신주를 배정하면서 발생하는 단주에 대한 처리방법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⑦ 회사는 제1항 제1호에 따라 신주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주주에게 신주인수권증서를 발행하여야 한다.

제10조 (시가발행) 이 회사는 신주를 발행함에 있어서 그 일부 또는 전부를 시가로 발행할 수 있으며, 이때의 그 발행가액은 이사회결의로 정한다.

제10조의2 (신주의 배당기산일) 회사가 유상증자, 무상증자 및 주식배당에 의하여 신주를 발행하는 경우, 그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신주를 발행한 때가 속하는 영업년도의 직전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10조의3 (주식매수선택권) ① 이 회사는 임·직원(상법 시행령 제30조에서 정하는 관계회사의 임·직원을 포함한다. 이하 이조에서 같다)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5의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에 의하여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결의로 회사의 이사를 제외한 자에 대하여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사회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 회사는 부여 후 처음으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결의에 의해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경영성과목표 또는 시장



지수 등에 연동하는 성과연동형으로 할 수 있다.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는 회사의 설립·경영·해외영업 또는 기술혁신 등에 기여하거나 기여할 수 있는 자로 하되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제외한다.

1.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이상의 주식을 가진 주주
2. 이사의 선임과 해임등 회사의 주요경영사항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3.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4. 제1호와 제2호에 규정된 자의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③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가격과 실질가액과의 차액을 현금 또는 자기주식으로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의 산정기준이 되는 주식을 말한다)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④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대상이 되는 임·직원의 수는 재직하는 임·직원의 100분의 15를 초과할 수 없고, 임원 또는 직원 1인에 대하여 부여하는 주식매수선택권은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0을 초과할 수 없다.

⑤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주식의 1주당 행사가격은 다음 각호의 가액 이상이어야 한다.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후 그 행사가격을 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목의 가격 중 높은 금액

가.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나. 당해 주식의 권면액

2. 자기주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일을 기준으로 한 주식의 실질가액

⑥ 주식매수선택권은 제1항의 결의일부터 3년이 경과한 날로부터 5년 내에 행사할 수 있다.

⑦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

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다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제1항의 결의일부터 2년내에 사망하거나 기타 본인의 귀책사유가 아닌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⑧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⑨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사회 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를 취소할 수 있다.

1.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본인의 의사에 따라 퇴임하거나 퇴직한 경우
2.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이 고의 또는 과실로 회사에 중대한 손해를 입힌 경우
3. 회사의 파산 또는 해산 등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에 응할 수 없는 경우
4. 기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취소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10조의4 (우리사주매수선택권) ① 회사는 1년 이상 근속한 우리사주조합원에게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20의 범위내에서 주주총회의 보통결의로 근로복지기본법 제39조의 규정에 의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발행주식의 100분의 10의 범위내에서는 이사회 결의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교부할 주식은 기명식 보통주식으로 한다.

③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1주당 행사가격은 근로복지기본법시행령 제20조 및 동법 규칙 제14조의 규정에서 정한 평가가격의 100분의 80이상으로 한다. 다만, 새로이 주식을 발행하여 교부하는 경우의 행사가격이 당해 주식의 권면액 보다 낮은 때에는 권면액으로 한다.

④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이를 타인에게 양도할 수 없으며, 당해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때까지 우리사주조합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다만,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가 사망한 때에는 상속인이 그 행사기간 동안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 ⑤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1항의 결의에 의한 부여일부터 6개월 이상 2년 이내의 기간으로 우리사주매수선택권 부여계약에서 정한 바에 따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 ⑥ 제10조의3 제9항 제2호 내지 제4호의 규정은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을 부여한 경우에 준용한다.
- ⑦ 우리사주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한 신주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조 (명의개서대리인) ① 이 회사는 주식의 명의개서대리인을 둔다.

- ② 명의개서대리인 및 그 사무취급장소와 대행업무의 범위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이를 공고한다.
- ③ 이 회사의 주주명부 또는 그 복본을 명의개서대리인의 사무취급장소에 비치하고 주식의 명의개서, 질권의 등록 또는 말소, 신탁재산의 표시 또는 말소, 주권의 발행, 신고의 접수, 기타 주식에 관한 사무는 명의개서대리인으로 하여금 취급케 한다.
- ④ 제3항의 사무취급에 관한 절차는 명의개서대리인의 증권의 명의개서대행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제12조 (주주등의 주소, 성명 및 인감 또는 서명등 신고) ①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그 성명, 주소 및 인감 또는 서명등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② 외국에 거주하는 주주와 등록질권자는 대한민국내에 통지를 받을 장소와 대리인을 정하여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신고사항의 변동이 있을때도 제11조의 명의개서대리인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 ④ 제1항 내지 제3항의 신고를 해태함으로써 인하여 생긴 손해에 대하여는 이 회사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13조 (주주명부의 폐쇄 및 기준일) ① 이 회사는 매년 1월 1일부터 1월 15일까지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한다.

② 이 회사는 매년 12월 31일 최종의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에서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한다.

③ 이 회사는 임시주주총회의 소집 기타 필요한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3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권리에 관한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을 정지하거나 이사회의 결의로 정한 날에 주주명부에 기재되어 있는 주주를 그 권리를 행사할 주주로 할 수 있으며,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주주명부의 기재변경정지와 기준일의 지정을 함께 할 수 있다. 회사는 이를 2주간전에 공고하여야 한다.

### 제 3 장 사 채

제14조 (사채의 발행)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이사회는 대표이사에게 사채의 발행금액 및 종류, 발행조건, 상환기간 등을 정하여 1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 내에 사채를 발행할 것을 위임할 수 있다.

제14조의2 (전환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의 결의로 주주외의 자에게 전환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전환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전환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의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 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 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 ③ 제1항의 전환사채에 있어서 이사회는 그 일부에 대하여만 전환권을 부여하는 조건으로도 이를 발행할 수 있다.
- ④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전환가액은 주식의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 ⑤ 전환을 청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는 결의로써 전환청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 ⑥ 전환으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과 전환사채에 대한 이자의 지급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조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 및 배정) ① 이 회사는 사채의 액면총액이 2,500억원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다음 각호의 경우 이사회는 결의로 주주 외의 자에게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할 수 있다.

1. 신주인수권부사채를 신기술의 도입, 재무구조의 개선 등 회사의 경영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제9조 제1항 제1호외의 방법으로 특정한 자(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를 배정하기 위하여 사채 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2. 제9조 제1항 제1호 외의 방법으로 불특정 다수인(이 회사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포함한다)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고 이에 따라 청약을 한 자에 대하여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으로 신주인수권부사채를 발행하는 경우

② 제1항 제2호의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는 경우에는 이사회가 결의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방식으로 사채를 배정하여야 한다.

1.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기회를 부여하는 자의 유형을 분류하지 아니하고 불특정 다수의 청약자에게 사채를 배정하는 방식
2. 주주에 대하여 우선적으로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청약되지 아니한 사채가 있는 경우 이를 불특정 다수인에게 사채를 배정받을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3. 투자매매업자 또는 투자중개업자가 인수인 또는 주선인으로서 마련한 수요예측 등 관계법규에서 정하는 합리적인 기준에 따라 특정한 유형의 자에게 사채인수의 청약을 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는 방식

③ 신주인수를 청구할 수 있는 금액은 이 사채의 액면총액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이사회가 정한다.

④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발행하는 주식은 기명식보통주식으로 하고 그 발행가액은 액면금액 또는 그 이상의 가액으로 이 사채발행시 이사회가 정한다.

⑤ 신주인수권을 행사할 수 있는 기간은 당해 사채의 발행일 익일부터 그 상환기일의 직전일까지로 한다. 그러나 위 기간내에서 이사회가 결의로써 신주인수권의 행사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⑥ 신주인수권의 행사로 인하여 발행하는 주식에 대한 이익의 배당에 관하여는 제10조의2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6조 (준용규정) 제11조, 제12조의 규정은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의 발행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 제 4 장 주 주 총 회

제17조 (총회의 구분 및 소집시기) ① 이 회사의 주주총회는 정기주주총회와 임시주주총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주주총회는 매영업년도 종료후 3월이내에 소집하고 임시주주총회는 필요에 따라 소집한다.

제18조 (소집권자) ① 주주총회의 소집은 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사회 의 결의에 따라 대표이사가 이를 소집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9조 (소집통지 및 공고) ① 주주총회를 소집함에는 그 일시, 장소 및 회의의 목적사항을 총회일 2주간전에 각 주주에게 서면 또는 전자문서로 통지를 발송하여야 한다. 다만, 그 통지가 주주명부상의 주주의 주소에 계속 3년간 도달하지 아니한 때에는 회사는 당해 주주에게 총회의 소집을 통지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1이하의 주식을 소유한 주주에 대한 소집통지는 2주간전에 주주총회를 소집한다는 뜻과 회의의 목적사항을 서울특별시에서 발행되는 매일경제신문과 한국경제신문에 2회이상 공고하거나 금융감독원 또는 한국거래소가 운용하는 전자공시시스템에 공고함으로써 제1항의 소집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③ 이 회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소집통지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함에 있어 회의의 목적사항이 이사의 선임에 관한 사항인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후보자의 성명, 약력, 추천인 등 후보자에 관한 사항을 통지하거나 공고하여야 한다.

④ 이 회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주주총회의 소집통지 또는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외이사 등의 활동내역과 보수에 관한 사항, 사업개요 등을 통지 또는 공고하거나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하고 일정

장소에 비치하여야 한다.

제20조 (소집지) 주주총회는 본점소재지에서 개최하되 필요에 따라 이의 인접지역에서도 개최할 수 있다.

제21조 (의장)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대표이사로 한다.

②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제34조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22조 (의장의 질서유지권) ① 주주총회의 의장은 고의로 의사진행을 방해하기 위한 발언·행동을 하는 등 현저히 질서를 문란하게 하는 자에 대하여 그 발언의 정지 또는 퇴장을 명할 수 있다.

② 주주총회의 의장은 의사진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주주의 발언의 시간 및 회수를 제한할 수 있다.

제23조 (주주의 의결권) 주주의 의결권은 1주마다 1개로 한다.

제24조 (상호주에 대한 의결권제한) 이 회사, 모회사 및 자회사 또는 자회사가 다른 회사의 발행주식총수의 10분의 1을 초과하는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 그 다른 회사가 가지고 있는 이 회사의 주식은 의결권이 없다.

제25조 (의결권의 불통일행사) ① 2이상의 의결권을 가지고 있는 주주가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하고자 할 때에는 회일의 3일전에 이 회사에 대하여 서면으로 그 뜻과 이유를 통지하여야 한다.

② 이 회사는 주주의 의결권의 불통일행사를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주주가 주식의 신탁을 인수하였거나 기타 타인을 위하여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26조 (의결권의 대리행사) ① 주주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그 의결권을 행사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대리인은 주주총회개시전에 그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위임장)을 제출하여야 한다.

제27조 (주주총회의 결의방법) 주주총회의 결의는 법령 또는 이 정관에 다른 정함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과반수로써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한다.

제28조 (주주총회의 의사록) 주주총회의 의사는 그 경과의 요령과 결과를 의사록에 기재하고 의장과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하여 본점과 지점에 비치한다.

## 제 5 장 이 사 · 이 사 회 및 위 원 회

제29조 (이사의 수) 이 회사의 이사는 3인 이상 9인 이내로 하고, 사외이사는 관계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임한다.

제30조 (이사의 선임) ① 이사는 주주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의 선임은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 과반수로 하되, 발행주식총수의 4분의 1 이상의 수로 하여야 한다.

③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하는 경우 상법 제382조의2에서 규정하는 집중투표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1조 (이사의 임기) 이사의 임기는 3년내의 최종 결산기에 관한 정기주주총회 종결시 까지로 한다.

제32조 (이사의 보선) ① 이사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주주총회에서 이를 보선한다. 그러나,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하지 아니하고 업무수행상 지장이 없는 경우에는 보선을 아니할 수 있다.

② 사외이사가 사임·사망 등의 사유로 인하여 이 정관 제29조에서 정하는 원수를 결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후 최초로 소집되는 주주총회에서 그 요건에 충족 되도록 하여야 한다.

제33조 (대표이사 등의 선임) ①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2인이내의 대표이사를 선임한다.

② 이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로 회장, 부회장, 사장, 부사장, 전무, 상무 약간명을 선임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선임을 위임할 수 있다.

제34조 (대표이사 등의 직무) ① 대표이사는 이 회사를 대표하고 이 회사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부사장, 전무, 상무는 대표이사를 보좌하고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이 회사의 업무를 분장집행하며, 대표이사의 유고시에는 위 순서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34조의2 (이사의 보고의무) ① 이사는 회사에 현저하게 손해를 미칠 염려가 있는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즉시 감사위원회에 이를 보고하여야 한다.

② 이사는 3월에 1회이상 업무의 집행상황을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34조의3 (이사의 회사에 대한 책임감경)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이사의 상법 제399조의 책임은 그 행위를 한 날 이전 최근 1년 간의 보수액(상여금과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이익등을 포함한다)의 6배(사외이사는 3배)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하여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있다.

② 이사가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손해를 발생시킨 경우와 이사가 상법 제397조(경업금지),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상법 제398조(자기거래금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제35조 (이사회 구성 및 권한) ① 이사회는 이사로 구성하며 이사회의 의장은 제36조 제1항의 이사회의 소집권자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 회사업무의 중요사항을 결의하고 이사의 직무집행을 감독한다.

③ 이사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제외하고는 그 권한을 제39조의 위원회에 위임할 수 있다.

1. 주주총회의 승인을 요하는 사항의 제안
2.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3. 위원회의 설치와 그 위원의 선임 및 해임
4. 정관이 정하는 사항

제36조 (이사회 소집) ① 이사회는 대표이사 사장 또는 이사회에서 따로 정한

이사가 있는 때에는 그 이사가 회일의 1일전에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 소집한다. 그러나 이사 전원의 동의가 있는 때에는 소집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의하여 소집권자로 지정되지 아니한 다른 이사는 소집권자인 이사에게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소집권자인 이사가 정당한 이유없이 이사회 소집을 거절하는 경우에는 다른 이사가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제37조 (이사회 결의방법) ① 이사회 결의는 이사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이사의 과반수로써 한다. 다만 상법 제397조의2(회사기회유용금지) 및 제398조(자기거래 금지)에 해당하는 사안에 대한 이사회 결의는 이사 3분의2 이상의 수로 한다.

② 이사회는 이사의 전부 또는 일부가 직접 회의에 출석하지 아니하고 모든 이사가 음성을 동시에 송·수신하는 통신수단에 의하여 결의에 참가하는 것을 허용할 수 있다. 이 경우 당해 이사는 이사회에 직접 출석한 것으로 본다.

③ 이사회 결의에 관하여 특별한 이해관계가 있는 자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제38조 (이사회 의사록) ① 이사회 의사에 관하여는 의사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② 의사록에는 의사의 안건, 경과요령, 그 결과, 반대하는 자와 그 반대이유를 기재하고 출석한 이사가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39조 (위원회) ① 이 회사는 이사회내에 다음 각호의 위원회를 둔다.

1. 경영위원회
2. 감사위원회
3.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4. 기타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위원회

② 각 위원회의 구성, 권한, 운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이사회 결의로 정한다.

③ 위원회는 결의된 사항을 각 이사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이를 통지받은 각 이사는 이사회 소집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사회는 위원회가 결의한 사항에 대하여 다시 결의할 수 있다.

④ 위원회에 대하여는 제35조 내지 제3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40조 (경영위원회) ① 경영위원회는 이사회에 결의에 따라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하며, 그 외 수시로 이사회가 위임한 사안에 대하여 심의하고 결의한다.

② 이사회는 경영위원회의 업무수행을 감독하여야 한다.

제40조의2 (감사위원회의 구성) ① 이 회사는 감사에 갈음하여 제39조에 의한 감사위원회를 둔다.

② 감사위원회는 3인 이상의 이사로 구성한다.

③ 위원의 3분의 2 이상은 사외이사이어야 하고, 사외이사 아닌 위원은 상법 제 542조의10 제2항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④ 사외이사인 감사위원회 위원의 선임에는 의결권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수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대하여는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⑤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회 위원을 선임하거나 해임할 때에는 의결권을 행사할 최대주주와 그 특수관계인,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의 계산으로 주식을 보유하는 자, 최대주주 또는 그 특수관계인에게 의결권을 위임한 자가 소유하는 의결권 있는 주식의 합계가 의결권 있는 발행주식총수의 100분의 3을 초과하는 경우 그 주주는 그 초과하는 주식에 관하여 의결권을 행사하지 못한다.

⑥ 감사위원회는 그 결의로 위원회를 대표할 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이 경우 위원장은 사외이사이어야 한다.

제40조의3 (감사위원회의 직무) ① 감사위원회는 이 회사의 회계와 업무를 감사한다.

② 감사위원회는 회의의 목적사항과 소집의 이유를 기재한 서면을 이사회에 제출하여 임시총회의 소집을 청구할 수 있다.

③ 감사위원회는 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자회사에 대하여 영업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자회사가 지체없이 보고를 하지 아니할 때 또는 그 보고의 내용을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자회사의 업무와 재산상태를 조사할 수 있다.

④ 감사위원회는 외부감사인의 선임에 있어 이를 승인한다.

⑤ 감사위원회는 제1항 내지 제4항 외에 이사회가 위임한 사항을 처리한다.

⑥ 감사위원회 결의에 대하여 이사회는 재결의할 수 없다.

⑦ 감사위원회는 회사의 비용으로 전문가의 도움을 구할 수 있다.

제40조의4 (감사록) ① 감사위원회는 감사에 관하여 감사록을 작성하여야 하며, 감사록에는 감사의 실시요령과 그 결과를 기재하고 감사를 실시한 감사위원회 위원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하여야 한다.

제40조의5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 ① 사외이사후보추천위원회는 상법 등 관련 법규에서 정한 자격을 갖춘 자 중에서 사외이사 후보를 추천한다.

② 사외이사 후보의 추천 및 자격심사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사외이사후보추천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41조 (이사 등의 보수와 퇴직금) ① 이사의 보수는 주주총회의 결의로 이를 정한다.

② 이사의 퇴직금의 지급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친 임원퇴직금지급규정에 의한다.

③ 제33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선임된 자의 보수는 이사회 결의로 정하고 퇴직금은 임원퇴직금지급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제42조 (상담역 및 고문) ① 이 회사는 이사회 결의로 상담역 또는 고문 약간명을 둘 수 있다.

② 상담역 또는 고문에 대하여는 이사회 결의에 따라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이사회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원회에 보수에 관한 사항을 위임할 수 있다.

## 제 6 장 계 산

제43조 (영업년도) 이 회사의 영업년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44조 (재무제표와 영업보고서의 작성·비치 등) ① 이 회사의 대표이사는 정기 주주총회 회일의 6주간전에 다음의 서류와 그 부속명세서 및 영업보고서를 작성하여 감사위원회의 감사를 받아야 하며, 다음 각호의 서류와 영업보고서를 정기 총회에 제출하여야 한다.

1. 대차대조표
2. 손익계산서
3. 그 밖에 회사의 재무상태와 경영성과를 표시하는 것으로서 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서류
4. 연결재무제표(상법시행령에서 정하는 연결재무제표 작성대상에 해당하는 경우)

② 감사위원회는 정기주주총회회일의 1주전까지 감사보고서를 대표이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불구하고 이 회사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에는 이사회회의 결의로 이를 승인할 수 있다.

1. 제1항의 각 서류가 법령 및 정관에 따라 회사의 재무상태 및 경영성과를 적정하게 표시하고 있다는 외부감사인의 의견이 있을 때
2. 감사위원 전원의 동의가 있을 때

④ 제3항에 따라 이사회가 승인한 경우에는 대표이사는 제1항의 각 서류의 내용을 주주총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⑤ 대표이사는 제1항의 서류와 감사보고서를 정기주주총회 회일의 1주간전부터 본점에 5년간, 그 등본을 지점에 3년간 비치하여야 한다.

⑥ 대표이사는 제1항 각 서류에 대한 주주총회의 승인 또는 제3항에 의한 이사회회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지체없이 대차대조표와 외부감사인의 감사의견을 공고하여야 한다.

제44조의2 (외부감사인의 선임) 회사는 주식회사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감사위원회의 승인을 얻어 외부감사인을 선임하며 그 사실을 선임한 사업년도

중에 소집되는 정기총회에 보고하거나 최근 주주명부폐쇄일의 주주에게 서면이나 전자 문서에 의한 통지 또는 회사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재한다.

제45조 (이익금의 처분) 이 회사는 매사업년도의 미처분이익잉여금을 다음과 같이 처분한다.

1. 이익준비금
2. 기타의 법정적립금
3. 배당금
4. 임의적립금
5. 기타의 이익잉여금처분액

제46조 (이익배당) ① 이익의 배당은 금전과 주식 및 기타의 재산으로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배당은 매결산기말현재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등록된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47조 (배당금지급청구권의 소멸시효) ① 배당금의 지급청구권은 5년간 이를 행사하지 아니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

② 제1항의 시효의 완성으로 인한 배당금은 이 회사에 귀속한다.

## 부 칙

제 1 조 (적용법령) 이 정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상법 또는 기타 법령에 의한다.

제 2 조 (시행일) 이 정관은 2014년 3월 21일부터 시행한다.

제 3 조 (기발행주식에 대한 경과규정) 제9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주식의 수를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제 4 조 (기 발행된 전환사채 및 신주인수권부사채에 대한 경과규정) 제14조의2 제1항 및 제15조 제1항의 발행한도는 이 정관 시행일 현재 기 발행된 사채의 금액을 차감하지 아니하고 새로이 계산한다.

## 정 관

제	정	1965년	9월	1일
개	정	1965년	9월	22일
	"	1967년	12월	1일
	"	1968년	6월	17일
	"	1972년	4월	7일
	"	1973년	2월	24일
	"	1974년	2월	14일
	"	1975년	1월	7일
	"	1976년	5월	17일
	"	1976년	6월	10일
	"	1976년	6월	12일
	"	1976년	6월	29일
	"	1978년	2월	28일
	"	1982년	2월	27일
	"	1983년	8월	27일
	"	1985년	8월	28일
	"	1986년	8월	28일
	"	1988년	8월	29일
	"	1991년	9월	17일
	"	1993년	9월	22일
	"	1995년	9월	15일
	"	1996년	9월	6일
	"	1997년	9월	25일
	"	1998년	9월	15일
	"	1999년	9월	16일
	"	2000년	9월	8일
	"	2001년	9월	21일
	"	2003년	3월	14일
	"	2005년	3월	11일
	"	2006년	3월	17일
	"	2007년	3월	16일
	"	2010년	3월	19일
	"	2011년	3월	18일
	"	2012년	3월	16일
	"	2013년	3월	22일
	"	2014년	3월	21일